

입·퇴소자 관리규정

제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입소(이용)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입소정원은 92명이다.

② 모집방법은 입소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원장의 재량에 의한 방법, 대중언론매체(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지역 내 타 유관기관(주민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방법,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제2조(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 동법 시행령 제5조 1,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르신을 입소대상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2.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에서 인정받은 자
3.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4. 각 호의 대상자가 입소 신청을 의뢰하면 입소위원회(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총별 총장 및 요양보호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소 결정을 한다.
5. 기타 시설장이 위급하게 입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

제3조(입소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장애어르신의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소계약) ① (계약기간) 제일요양원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이나 유효기간이 변경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예외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하 ‘을’)또는 보호자(이하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제일요양원(이하 ‘갑’)이 통보하는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입소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정원이나 ‘을’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어 시설입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종료)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또는 ‘병’)에게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행위의 요구 및 입소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을’(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내용변경) ‘을’의 요양등급 재판정 결과 ‘을’의 등급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등 시설입소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계약해제) ‘을’(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을’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정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을’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갑’은 ‘을’ 또는 ‘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催告)하고 ‘을’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갑’의 장기입원(장기외박)이 발생하여 그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입소대기자의 신규 입소를 위해 ‘병’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을’과 ‘병’의 해지 : ‘을’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시설퇴소에 대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별표1 참고>

① (이용료 납부일) 매월 이용료는 익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② (비용부담) ‘을’ 또는 ‘병’은 매월 제공되는 급여명세서의 월납 본인일부

부담금과 기타 비용부담액을 ‘갑’의 지정은행계좌에 입금한다.

- ③ (개별 실비 서비스) ‘을’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해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을’ 또는 ‘병’이 별도로 부담한다.
- ④ (외출·외박·입원) 이용기간 중 ‘을’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할 경우에는 일정 일까지(장기요양의 경우 최대 10일)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입소비용의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⑥ (입소보증금 등) 시설입소 보증금은 일체 수납하지 않는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자 부담금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가 변경고시가 있는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급여를 ‘갑’이 변경 책정 시에는 그 내용을 ‘을’ 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을’ 또는 ‘병’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이용자 부담금을 변경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갑’의 의무
 - 1. ‘을’의 건강관리 협조
 - 2. ‘을’의 건강한 삶 유지 및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3. 적정식사 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 4. 요양시설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5. ‘을’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 ② ‘을’의 의무
 -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납부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3.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노력
 -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5.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
 -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 ③ ‘병’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상황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2. ‘을’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무

제9조(퇴소) ① ‘갑’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을’ 또는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시설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을’)에게 통보 후 ‘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갑’은 현금 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송금하고, ‘을’이 이용료 지불 잔액이 있을 때에는 퇴소 시 그 지불잔액을 ‘갑’의 계좌에 입금 후 퇴소한다.

제10조(제공 서비스 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시설급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 일상생활지원
2. 건강관리
3. 위생관리
4. 식사제공
5. 생활상담 및 조언
6. 여가활동지원
7. 기본 의료서비스
8. 기타 서비스

제11조(특별보호) 요양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가 특별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급자 어르신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대처(특별보호: 신체제제, 호스피스 등)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의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2. 일시적으로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입소 어르신에게는 특별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제공한다.
3.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동 후송을 적극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어르신의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4. 특별 보호에 대한 비용은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만 본인이나 가족이 실비 부담한다.

제12조(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 내 의료서비스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을’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을’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입소 기간 중 ‘갑’은 ‘을’에게 자체 요양 서비스의 범주를 벗어난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의 책임 하에 의료시설에 통원진료 또는 입소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간병은 ‘을 또는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갑’은 입소 시 ‘을’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을 물론, ‘을’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을’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갑’은 ‘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의료협약기관 또는 축탁의사 운용

1. ‘갑’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의사로부터 2주 1회 이상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③ 병원 후송 및 진료

1. 입소 기간 중 ‘갑’은 ‘을’에게 자체 요양 서비스의 범주를 벗어난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의 책임 하에 의료시설에 통원 진료 또는 입원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간병은 ‘을’ 또는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외부 진료 및 입원 진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 이송차량으로 신속히 후송되어 ‘을’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병’에게 응급상황을 알린다.
2. ‘병’은 ‘을’의 응급상황을 통보받은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다만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위급상황 후송 시에는 협약병원 또는 ‘을’, ‘병’이 지정하는 병원 또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4.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 직원이 병원 후송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살피며 ‘병’이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수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전원조치

‘을’의 질환의 중증 또는 증상악화로 인해 장기적인 집중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 또는 ‘병’과 협의하여 전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사용 상 주의사항) ① ‘을’ 또는 ‘병’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병’ 등의 가족이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입소자는 그 거실을 주거에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③ 시설 공동부분을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전용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관상용 새 또는 관상용 어류, 동물 등을 사육할 수 없다.
- ⑤ 이용자가 시설물을 오·파손 시켰을 시, 원상 복구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관리 및 처우) ① ‘갑’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을 요양함에 있어서 다른 입소자와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을’도 ‘갑’에게 특별한 대우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시설물 배상) ①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을’에 의한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滅失)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원상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을’ 또는 ‘병’이 원상 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을’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갑’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을’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을’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제17조(면회 및 외출·외박)** ① ‘을’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6:00까지로 한다.(단,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면회방식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 ② ‘을’은 외출·외박을 원할 시 사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은 ‘을’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을’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 또는 ‘병’은 ‘갑’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8조(물품의 반입)** ① ‘을’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갑’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 ② ‘을’과 ‘병’은 찹쌀떡, 방울토마토 등 어르신의 삼킴 장애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시설 내 반입을 절대 금해야 하며, 반드시 반입하고자 하는 음식물·의약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권리)** ① ‘을’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을’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을’은 시설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보장받고 평등하게 존경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
- ⑥ ‘을’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⑦ ‘을’은 요양생활 중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반 개선사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20조(임종 및 장례와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무연고자인 경우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후송하여 가족과 함께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송 조치 및 호스피스 병동 입원 조치는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이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갑’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장례는 ‘을’의 유지를 고려하되, ‘병’ 또는 신원인수인(‘병’이 위임한 자)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한다.
4. ‘을’의 사망 시 ‘병’ 또는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가족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지역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등)의 영안실에 시신을 안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병’이 일체 부담한다.
6. 신원인수인이 2주 이상 시신이수를 거부하거나 ‘병’의 연락이 2주 이상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시신을 가매장 처리하거나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그 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추후 ‘병’이 일체 부담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병원 치료 및 입원은 ‘갑’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21조(식사 및 간식) ① ‘갑’은 1일 3식 및 간식을 ‘을’에게 제공하며, ‘을’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식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을’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갑’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을’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생활실 배정) ‘을’의 생활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을’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을 또는 ’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갑’이 조정할 수도 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
밀을 보장한다.

제24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
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
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
에 제기한다.

<별표1>

월납 본인 일부부담금과 기타 비용부담액 안내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요양보호사 배치 2.3명당 1명) (단위: 1일,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2	75,840	15,168
3,4,5	71,620	14,324

2. 장기요양 급여 (2023. 1. 1. 기준)

등 급	노인요양시설 시설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31일 기준)		
	일반(20%)	경감(12%)	경감(8%)
1등급 (81,750)	506,850	304,110	202,740
2등급 (75,840)	470,200	282,120	188,080
3~5등급 (71,620)	444,040	266,420	177,610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3. 기타 비용부담액(장기요양 비급여)

비급여 항목	단가	1달 금액(31일 기준)
식재료비 (간식비)	2,800원/식 (600원)	279,000원

※ 의료비는 실비 청구합니다.

4. 본인비용부담금의 변동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수가 변동고시와 '갑'의 비급여 변경에 따라 각각 그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